

의 정 정 보

2009 - 8 8. 10.

Ⅰ.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Ⅱ.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3
Ⅲ.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31
Ⅳ.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52
<부록> 행복한 책 읽기	74

▣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환경부 지침에 따른 에너지 마일리지제 시행	—	1
2.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	2
3.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 표창	—	3
4. 국회의원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축부의금 등 제공	—	4
5. 하수도 사용료 면제 조례	—	4
6.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	5
7. 국회의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연 개최 등	—	7
8.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상장수여	—	8
9. 선거기간 중 『바다의 날』 행사 개최	—	9

최근 선거법 관련 질의·회신 자료

1 환경부 지침에 따른 에너지 마일리지제 시행

《질 의》

우리시에서는 고유가 시대를 맞아 온실가스(CO2) 배출 저감 및 시민들의 에너지절약 실천분위기 확산과 생활 속의 실효적인 에너지절약의 동참을 유도하고자,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 2009-87호)」에 의한 탄소포인트제와 유사시책인 『에너지 마일리지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할 예정입니다.

본 시책의 선거관계법령 위반 여부를 질의하오니 본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빠른 시일내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시 의견〉

『에너지 마일리지제』 시행은 「마산시 에너지 기본조례」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 있고, 부처는 달리하지만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탄소포인트 제도』와 유사한 시책이며,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합하는 온실가스(CO2) 배출감소 대책의 일환이므로 선거법령에 저촉이 없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시는 『에너지 마일리지제』에 대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탄소포인트제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인정하는 답신문서를 받았음. (2009. 6. 15. 마산시장 질의)

《답 변》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하여 제정·고시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귀문의 에너지 마일리지제를 시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9.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2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 인센티브 지급

《질 의》

우리부에서는 정부의 「기후변화대응 종합기본계획」('08. 9. 19)에 따라 가정·상업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에 따라 포인트를 발급하고,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저탄소 녹색생활 문화 정착을 유도하는 『탄소포인트제』를 '08. 11월부터 시범 실시하여 왔으며 '09. 7. 1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2009- 87 호, 2009. 6. 18)을 붙임과 같이 제정·고시하였으며, 동 고시안에는 탄소포인트제 운영방법 및 참여 지방자치단체의 인센티브 지급 등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의 본격 시행에 앞서 『탄소포인트제』운영에 따라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를 다음과 같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 내용

지방자치단체의 『탄소포인트제도』운영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행위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에 의한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 환경부의 견해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에 해당하여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 제1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환경부장관과 문서로 협의하는 경우, 환경부에서는 협의내용에 대하여 동 규정의 범위 내에서 엄격하게 심사할 계획임. (2009. 6. 18. 환경부장관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환경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81조에 의하여 제정·고시한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관한 규정」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탄소포인트제 운용에 따른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에 따라 무방할 것임. (2009. 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3 지방자치단체의 상근인력 표창

《질 의》

우리시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표창조례에 따라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표창·포상하는 경우 종전의 관례에 벗어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부상을 수여하고 있으나, 공무원신규채용규정을 준용하여 채용한 상근인력(상용, 환경미화원, 청원경찰 등)은 정년(59세)이 보장된 서울시 산하기관 및 자치구 소속직원임에도 공무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장 표창을 수여하더라도 부상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상근인력의 사기저하 및 직원 차별 등을 이유로 불만을 표출하여 업무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 상근인력 현황

○ 한강사업본부 : 252명(상용 88, 청원경찰 164)

○ 서울특별시 5,246명(상용 1,419, 청원경찰 557, 환경미화원 3,270)

○ 전국 53,698명(상용 3,198, 청원경찰 10,500, 환경미화원 40,000)

이에 「지방공무원법」 제79조(표창)를 개정한다는 것은 지방공무원법의 목적을 개정해야 하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으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 및 제112조에 따른 상근직원도 소속직원임을 감안하여 일반시민과 달리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범위 내에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오니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 6. 11.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공직선거법」 제112조제2항제4호가목·나목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제5항제4호가목에 따라 소속 상근인력에게 표창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부상은 수여할 수 없을 것입니다. (2009. 7.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4 국회의원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회에 대한 축부의금 등 제공

《질 의》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 직을 맡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 구 당원협의회 소속 운영위원(선출직 도의원, 시의원 포함)의 애경사에 축의금, 조의금, 화환 등을 보낼 수 있는지? (2009. 6. 29. 국회의원 신상진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113조에 위반될 것임. (2009. 7. 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5 하수도 사용료 면제 조례

《질 의》

「공직선거법」 제86조와 관련입니다.
우리시 의원발의 개정조례안 내용 중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하수도사용료 감면확대 내용이 있어 이 개정 조례안이 「공직선거법」 제86조 제3항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개정 조례안 주요내용

○ 의안발의 : 시의원 13인 공동발의

○ 제안이유

-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에 의거 조례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행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감면사항을 조례에 규정하여 입법권 확립
- 물재생시설 인근주민의 경우 악취 등으로 주민의 재산적, 정신적 피

해가 크므로 혐오시설간 형평성 제고차원에서 감면율 상향 조정 필요

○ 주요골자

- 현행 서울시 하수도사용조례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용료 감면사항을 조례상에 규정
- 물재생시설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거주 가구에 대하여 사용료 전액 면제 (현행 50% 감면 → 전액 면제)

○ 향후 일정

- '09년 7월 중 시의회 의결을 거쳐 서울특별시장이 공포 예정(공포일로부터 시행)

□ 질의내용

1. 시의회에서 조례개정 후 집행부로 이송되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제1호의 기간내에 감면확대를 시행하는 경우, 공직선거법 저촉여부
2. 조례개정시 감면확대 시행시기를 선거일 이후로 하는 경과규정을 둘 경우에도, 경과규정이 약속행위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저촉되는지 여부 (2009. 6. 24. 서울특별시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하수도법」 제6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의 범위 안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임. (2009. 7.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6 조례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지급

《질 의》

우리구에서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2007. 12. 26.자로 “서울특별시 양천구 국가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공포 시행하면서 같은 조례 제10조(참전 명예수당)에 “구청장은 제2조제3호의 참전유공자로서 지급일 현재 양천구에 5년 이상 주소를 둔 만 65세 이상인 자에 대하여 월 20,000원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면서 부칙 제1조(시행일)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의 규정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는 규정에 근거하여 2009년도 본예산에 참전명예수당 관련 예산을 확보 2009년 7월부터 지급할 계획입니다.

※ 2007년 조례 공포와 동시 미시행 사유 : 소요예산 확보 곤란

※ 7월 시행 예상 대상자에 대한 안내 및 신청서 접수가 1,100명으로 미지급시 많은 항의와 민원이 예상됨.

우리구에서 2007. 12. 26.자로 공포 시행한 조례에 근거하여 참전 명예수당의 지급이 가능한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법 제6조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주체에 포함되므로 법률에 의한 행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그에 따른 조례를 제정 시행함에 있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 시기(1년 제한)와는 관계없는 법령사항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갑 설)

지난 '09. 6. 24. 국가보훈처, '09. 6. 29. 법제처로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의 참전명예수당 규정의 행위주체가 명시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법 체계상 지방자치단체도 참전명예수당 지급의 행위 주체에 포함 된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에 있어 같은 조 제6항에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지급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바, 이 때의 행위 주체는 국가를 의미하지만 지방자치단체도 같은 법 제6조(참전명예수당)행위의 주체에 포함(유권해석)되므로 지방자치단체가 지급의 주체로서 구체적인 지급범위, 지급액, 지급시기 등이 명시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행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조례는 이미 법령에서 위임된 것으로 보아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시기(1년제한)에 제한받지 않는 법령행위에 해당한다.

※ 참고로 246개 지방자치단체 중 127개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참전명예

수당을 지급 또는 조례 제정
(을 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6항의 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 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명시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참전명예수당은 법령사항이 아니고 조례에 의하여 지급하는 사항으로 행위제한(1년)에 저촉을 받는다.

(우리구 의견) -- 갑 설 (2009. 7. 7. 양천구청장 질의)

《답 변》

귀견 을설과 같음. (2009. 7. 10.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7 국회위원의 박사학위 취득 축하연 개최 등

《질 의》

1. 국회위원의 박사학위 취득과 관련하여 박사학위 취득에 대한 축하연을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개최하고자 할 때
가. 관련 비용을 후원회원들이 자발적으로 걸어서 할 수 있는지
나. 관련 비용을 국회위원 후원회가 후원금으로 부담할 수 있는지도. 후원회원 위주의 축하연에서 식사나 음식물을 제공해도 무방한지
2. 국회위원이 같은 지역의 시의원과 함께 의정보고서를 작성하여 배부할 수 있는지
3. 국회위원이 같은 지역의 시의원과 함께 의정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는지 (2009. 7. 2. 국회의원 박기춘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원회원들이 후원회와 무관하게 자발적으로 비용을 부담하여 선거운동이나 기부행위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축하연을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이나, 정치자금의 기부를 목적으로 설립·운영되는 후원회가 축하연의 비용을 부담하는 때에는 「정치자금법」 제2조제3항 및 「공직선거법」 제114조에 위반될 것임.

2. 문 2·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이 서로에 대한 지지·추천·선전하는 내용없이 각각 구분되게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 배부하거나 선거구가 겹치는 지역에서 공동으로 의정활동보고회를 개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009. 7. 1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8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행사에서 상장수여

《질 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의 제한기간에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포상조례에 따라 일반 선거구민에게 상장을 수여할 경우 직·성명을 표기하여 상장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인 인사말만을 하고 퇴장한 후 지방자치단체장 명의의 상장을 대리 수여하는 경우 상장을 줄 당시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없으면 가능한지 그 장소에 참석하는 자체가 법 제86조제4항제2호의 추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당되어 불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009. 7. 13. 마포구청장 질의)

《답 변》

귀문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참석한 장소 또는 행사에서 상장을 수여하는 행위에 해당될 것이므로 「공직선거법」 제86조제3항에 위반될 것임. (2009.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9 선거기간 중 『바다의 날』 행사 개최

《질 의》

우리부에서는 국민들에게 해양사상을 고취하고, 해양의 중요성을 일깨우기 위해 매년 “바다의 날(5.31)”을 맞아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념식을 개최하고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10년도에 개최되는 “제15회 바다의 날(2010. 5. 31) 행사”가 제5회 전국동시지방선거(2010. 6. 2) 기간 중에 개최됨에 따라 다음 사항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방선거기간 중 우리부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지 여부

※ 우리부에서는 매년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 개최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받아 “바다의 날 개최지 선정위원회(국토해양부)”에서 공모로 개최장소를 결정함.

2. 바다의 날 기념식 행사에 참석한 일반 주민들에게 점심(도시락 1만원 상당)을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3. 기념식에 행사주관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인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 이하 같음)의 환영사 등을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

4. 지방자치단체장 명의로 초청장 발송이 가능한지 여부 (2009. 6. 17. 국토해양부 장관 질의)

《답 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기념행사 개최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계획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기념식 행사를 개최하는 것은 선거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다만, 행사를 개최함에 있어 같은 법 제9조·제86조·제103조 등에 위반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86조제1항제4호에 위반될 것임.

3. 문 3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이 선거와 무관하게 환영사를 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4. 문 4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중앙행정기관이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기념행사를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때에, 동 행사를 알리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의 직명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 이하 같음)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권한대행인 부단체장의 성명을 포함한 의례적인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상 무방할 것임.
(2009. 7. 16.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자료출처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http://www.nec.go.kr/>]

▣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3
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15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17
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	19
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1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	23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	25
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7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	28

최근 주요 제·개정 법령

1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00호, 2009.07.01.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되는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이러한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중이용업소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9330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 중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다중이용업소를 산후조리업 및 고시원업의 영업장으로 정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2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01호, 2009.07.01.공포]

1. 개정이유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 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하고, 비상대비교육의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각급 행정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하

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조문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영 제2조의2 신설)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주무부장관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나. 비상대비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 변경(영 제3조제2항)

최근 안보환경을 반영하여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를 전전년도 12월 말일에서 전년도 1월 말일로 변경함.

다. 자원소요 심의·조정 근거 신설(영 제3조의2 신설)

국가동원능력의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비상시 필요한 자원소요를 행정안전부장관이 심의·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라.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신설(영 제14조제4항)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함.

마.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등(영 제20조의2 및 제20조의3 신설)

비상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3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02호, 2009.07.01. 공포]

1. 개정이유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9569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되어 법률 제명이 「도로명주소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시행령의 제명을 「도로명주소법 시행령」으로 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관리체계를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건물번호로 세분화함에 따라 그 설정·부여·변경·폐지 기준 및 절차를 보장·마련하며, 명예도로명 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명예도로명 부여 절차 등을 마련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령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도로구간·건물번호의 설정·부여·변경·폐지 기준(영 제6조의2 신설, 영 제8조)

- 1) 현행제도는 도로구간의 설정기준과 건물번호의 부여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도로구간의 변경·폐지 및 건물등의 변경·멸실에 대한 관리가 미흡한 실정임.
- 2) 도로구간의 설정기준과 건물번호의 부여기준을 상세하게 규정하여 도로구간의 변경기준과 건물번호의 변경기준으로도 적용할 수 있게 하고, 도로구간에 속하는 도로가 폐지되는 등 그 요건을 모두 갖추면 그 도로구간을 폐지할 수 있게 하며, 건물등의 멸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건물번호를 폐지하도록 함.
- 3) 도로구간·건물번호의 설정·부여·변경·폐지 기준을 보장 및 마련함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도로구간 및 기초번호의 변경 절차(영 제6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 1) 도로구간을 변경할 때에는 관련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해당 도로구간이 변경되면 도로명주소를 변경하여야 하는 자의 2분의 1 이상으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아 그 변경 사실을 고시하도록 하며, 기초번호를 변경할 때에는 주민 의견 수렴 및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그 변경 사실을 고시하도록 함.
- 2) 도로명주소의 변경에 영향을 주는 도로구간·기초번호의 변경 절차를 엄격히 함으로써 주민이 주소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구간 등의 설정 절차 등(영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 신설)

- 1) 법이 개정되어 시장등이 하던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 등의 설정·부여·변경의 결정을 시·도지사 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하게 됨에 따라 필요한 절차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 2) 2개 이상의 시·군·구 또는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한 도로구간·도로명·기초번호를 설정·부여·변경할 때에는 시장등이 시·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고, 시·도지사는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인접 시장등의 의견 수렴과 주민의 의견 수렴 및 시·도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거쳐 직접 그 도로구간 등의 설정 등을 결정·고시하도록 하며,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쳐 있는 도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결정을 신청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 등을 거쳐 직접 결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영 제11조의5 신설)

- 1) 명예도로명을 부여할 때에는 그 이름이 명예도로명으로 사용될 사람 등의 도덕성, 사회 헌신도 및 공익성 등과 다른 도로명과의 중복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고, 시·군·구 도로명주소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공보 등에 공고하도록 함.

- 2) 명예도로명의 부여 절차를 정하여 명예도로명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마.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제공(영 제12조 및 부칙 제4조)

행정안전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등은 도로명주소의 활용 등을 위한 용도로 도로명주소안내도의 교부를 요청한 자가 있으면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명주소안내도를 유료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되, 2015년까지는 무료로 제공할 수 있게 함.

바. 개발사업시행자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영 제12조의2 신설)

- 1) 도시 및 주택재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경우 그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계획 또는 비용부담계획을 포함한 도로명주소안내시설 설치계획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게 함.
- 2) 각종 개발사업 지역에서의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 관련 절차를 정함으로써 앞으로 개발사업 지역에서도 도로명주소안내시설의 설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4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03호, 2009.07.01. 공포]

1. 개정이유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민간기업 등이 특구계획을 지방자치단체에 제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이 개정(법률 제9588호,

2009. 4. 1. 공포, 7.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와 표현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고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민간기업 등으로부터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을 제안받은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특구계획을 제안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특구지정의 필요성을 검토하여야 하고, 검토 결과 특구지정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특구계획안에 그 내용을 반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기업 등과 협의하여 그 내용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영 제3조의2 신설).
- 나.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 시 지식경제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지역특화발전특구계획에 포함된 규제특례사항이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규제특례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규제특례사항에 동의하지 않거나 조건부로 동의할 때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도록 함(영 제6조).
- 다.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가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등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지역특화발전특구 운영 성과의 평가결과를 공개할 때에는 평가영역별 순위 및 성과의 주요 내용 등을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함(영 제25조의2).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2일부터 시행한다.

5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1616호. 2009.07.07. 공포]

1. 개정이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이 제정(법률 제9525호, 2009. 3. 25. 공포, 9. 26.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등 특정동산의 저당권의 등록 등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저당권의 설정등록(영 제2조)

저당권 설정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신청서에 채권액, 채무자의 성명, 변제기 등을 적고, 설정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특정동산의 등록관청에 제출하도록 하되, 항공기에 대한 저당권등록은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 또는 대리인이 국토해양부에 출석하여 신청하도록 함.

나. 공동저당 등록(영 제3조)

공동저당은 같은 종류의 특정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공동저당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특정동산별로 규정함.

다. 저당권의 변경등록(영 제4조)

저당권의 변경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하고, 변경등록은 주등록에 부기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함.

라. 저당권의 이전등록(영 제5조)

저당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할 경우에는 피담보채권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이전등록은 주등록에 부기(附記)하는 방법으로 등록하도록 함.

마. 저당권의 말소등록(영 제6조)

저당권설정자가 저당권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제권판결을 받거나 「공탁법」에 따른 공탁을 하고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저당권의 말소등록에 관하여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도록 함.

바. 항공기 저당권에 관한 특례(영 제7조)

「항공기등록령」 제36조에 따라 항공기에 관한 공매신청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 저당권 등록도 말소하도록 하고, 저당권자에게 저당권의 등록 말소를 통지한 경우 항공기 등록원부에 그 사실을 적도록 함.

사. 등록된 권리의 우선순위(영 제8조)

등록된 권리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르고, 부기등록의 순위는 주등록의 순위에 따르며, 부기등록 상호간의 순위는 등록된 순서에 따르도록 함.

아. 수수료(영 제10조)

건설기계 및 항공기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등록에 대하여도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함.

자. 경정등록(영 제11조)

등록관청의 과오로 저당권의 등록에 관한 누락 등이 있는 경우 부기로써 경정등록을 한 후 이해관계인 등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등록관청의 과오로 인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지체 없이 등록권리자 등에게 통지하도록 함.

차. 준용규정(영 제12조)

특정동산의 저당권 등록 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건설기계에 대해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자동차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령」을, 항공기에 대해서는 「항공기등록령」을, 소형선박에 대해서는 「선박법 시행령」 또는 「어선법 시행령」을 각각 준용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한다.

6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18호, 2009.07.07. 공포]

1. 개정이유

모성의 범위를 명확히 하면서 모자보건사업의 범위를 확대하고 산후조리원에서의 감염·질병·안전사고 등 발생 시 의료기관 이송 사실에 대한 보고 체계 구축 등을 주요내용으로 「모자보건법」이 개정(법률 제9333호, 2009. 1. 7. 공포, 7. 8.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면서, 태아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하며, 임신부와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이 영의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 범위를 축소(영 제15조)

- 1) 현대 의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태아의 모체 밖 생명 유지가능성 시기 및 의학적 근거가 불명확한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과 전염성 질환을 고려하여 이를 인공임신중절수술 관련 규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 2)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임신한 날부터 28주일 이내에서

임신 24주일 이내로 변경하는 한편,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질환의 종류에서 유전성 정신분열증, 유전성 조울증, 유전성 간질증, 유전성 정신박약, 유전성 운동신경원 질환, 혈우병 및 현저한 범죄경향이 있는 유전성 정신장애를 삭제하고, 앞으로는 연골무형성증, 낭성섬유증 및 그 밖의 유전성 질환으로서 그 질환이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게 하며,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할 수 있는 전염성 질환의 종류에서 수두, 간염, 후천성면역결핍증 및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전염병을 제외하고, 앞으로는 풍진, 독소플라즈마증 및 그 밖에 의학적으로 태아에 미치는 위험성이 높은 전염성 질환의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함.

- 3) 이와 같이 현대 의학기술을 고려하여 인공임신중절수술 허용 기간을 단축하고, 치료가 가능하거나 의학적 근거가 불분명한 질환 등을 삭제함으로써 태아 및 모성의 생명을 존중하고 법과 현실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 확대(영 제16조제1항)

산후조리원의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범위에 종전에는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사람 중 임산부 및 영유아를 접촉하지 아니하고 청소나 세탁 등의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은 제외하던 것을 산후조리업자와 산후조리원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이 포함되도록 그 범위를 확대함.

3. 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25호, 2009.07.07. 공포]

1. 개정이유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현행 용도지역에 맞지 않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 및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 등 토지이용규제를 완화하고, 상가·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토지거래계약허가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토지거래계약허가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개발행위허가 시 연접 합산기준 개선(영 제55조제4항 단서)

- 1) 현행 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개발지에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개발행위 허가 면적을 산정하고 있으나,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아니하여 제도 운영에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 2)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된 지역, 용도지역이 다른 지역, 법률 시행일인 2003년 1월 1일 전에 개발행위가 완료된 지역등인 경우에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연접으로 볼 수 있는 시간적·공간적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함.

나.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의 한시적 증축 허용(영 제93조제4항 신설, 영 부칙 제2조)

- 1) 보전 목적의 용도지역으로 결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입지한 기존 공장은 종전 용도와 허가받은 규모대로 이용할 수 있으나 증축이 제한되어 추가적인 설비투자 등이 곤란하여 기업 활동에 제약을 초래하고 있음.
- 2)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으로서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반시설의 설치 및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이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존 부지에 한하여 2년간 한시적으로 증축을 허용함.

다. 주택 외의 시설 분양을 위한 토지 취득 시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영 제121조제6호, 영 제121조제16호의4 신설)

- 1) 현재 주택을 공급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상가나 오피스텔 등의 분양을 위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에 해당되어 해당 건축물의 매매 및 임대차에 관한 실정임.
- 2) 주택과 마찬가지로 상가나 오피스텔 등 주택 외의 시설을 분양하기 위하여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도록 함.

라.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업종제한 폐지(영 별표 20 제1호차목)

- 1) 현재 계획관리지역의 공장 입지와 관련하여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규제와 함께 공장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으나, 배출규제와 업종규제가 중복되고 대기 및 수질오염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획일적으로 업종을 제한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한 실정임.
- 2)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입지에 대한 업종제한을 폐지하고, 특정 대기·수질 유해물질의 배출 여부 및 위해 정도에 따라 공장입지를 제한하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1조제1항 및 제112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8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제21629호, 2009.07.16. 공포]

1. 개정이유

농축산업 및 관광산업의 건축비용 부담 경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설계·감리 등의 규제와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 등의 규제를 완화하고, 창의적인 건축 설계를 통한 도시 미관 향상 등을 위하여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를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신고 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 확대(영 제15조제5항제2호 및 제12호)

- 1)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나 공장에 설치되는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의 천막은 대부분 가설건축물의 형태로 설치되나 그 설치기준이나 허가 또는 신고 여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설치자의 불편을 초래함.
- 2) 농수축산물 직거래용 가설점포와 간이포장용, 간이수선작업용 등으로 쓰기 위하여 공장에 설치하는 천막을 신고대상 가설건축물의 범위에 포함함.

나.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규제 완화(영 제18조 및 제28조 제2항, 영 제19조제5항제1호 단서 신설)

- 1) 농축산업자의 부담을 경감함으로써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대한 건축설계, 감리 및 대지와 도로와의 관계에 관한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의 창고와 연면적 40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건축사의 설계 대상에서 제외하고, 상주감리 대상인 바닥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축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며, 대지가 도로에 접하여야 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의 측사 및 작물 재배사는 제외하도록 함.

다. 관광시설에 대한 조경기준 적용 완화(영 제27조제1항제10호 신설)

- 1) 건축비용의 절감 등을 통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변의 양호한 환경을 조경으로 활용할 수 있는 관광·휴양
시설의 경우에는 대지의 조경에 관한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
- 2) 전문휴양업 또는 종합휴양업의 시설, 관광지·관광단지 또는 관광
·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및 골프장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라. 옥상 헬리포트 설치 의무 완화(영 제40조제3항)

- 1)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헬리콥터의 이·착륙 시 인접건축물과의 충돌 우려
등으로 실효성은 떨어지는 반면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 가중과 옥
상 디자인 제한에 따른 도시경관의 저해를 초래함.
- 2) 11층 이상이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
서 옥상이 평지붕인 경우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거나 헬리콥터를
통하여 인명 등을 구조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도록 함으로써
헬리포트 설치의무를 완화함.

마.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영 제86조 제2항제2호)

- 1) 공동주택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채광을 위하여 띄어야 하는
거리를 획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토지 이용의 비효율성을 초래
하고, 다양한 공동주택의 배치에 제약이 되고 있음.
- 2) 채광을 위한 공동주택간 이격거리를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
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에서 0.5배 이
상의 범위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으로 완화하고, 건축
물과 부대복리시설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에는 부대복리시설
각 부분 높이의 1배 이상을 띄우도록 함.

3.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9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보건복지가족부령 제124호, 2009.07.01. 공포]

1. 개정이유

보육서비스 이용권 제도 및 취약보육 대상의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 공포, 2009. 7. 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신청 및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가족 아동에 대한 보육을 포함하며,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 기준 등 설치 기준 및 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한편,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발급 및 관리(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신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영유아의 보호자의 신청에 따라 이를 발급하고, 영유아의 보호자는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보육시설에 제시하여야 함.
- 2)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보육서비스 이용권을 전자적으로 발급·관리하고, 이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나. 보육시설의 놀이터 설치 및 비상재해 대비시설 기준 정비

- 1)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을 현행 총정원 규모에서 동일시간대에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변경하고, 기존에 개별 법률에서 분산되어 규정되어 있던 놀이터 관련 안전기준을 함께 규정함.
- 2) 비상재해 대비시설과 관련하여 보육시설의 양방향 대피를 명시하고, 비상재해 대비시설의 종류를 스프링클러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까지 확대함.

3.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문화체육관광부령 제36호, 2009.07.01. 공포]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009년 3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경제위기 조기극복을 위하여 경기활성화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정기간 유예하거나 완화하는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를 도입·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체육시설 중 체육도장업, 체력단련장업 및 당구장업의 시설기준 일부를 2009년 7월 1일부터 2011년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자료출처 : 법제처, <http://www.moleg.go.kr/>]

▣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1.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 31
2.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 45

최근 타 시·도 제·개정 조례

□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09. 07.

발 의 자 : 도 이 환 의원
(찬성의원 인)

1. 제정 이유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정 범위 내에서 입주업체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를 제정하여 우선순위 선정방법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발전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에서 산업단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산업입지심의회를 설치하고, 그 기능은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함(안 제3조)
- 나. 산업시설용지의 일정비율(국가산업단지 10/100, 일반산업단지 30/100)에 대하여 입주업체 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4조)
- 다. 산업단지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 라. 산업단지계획 승인과 관계 행정기관 간의 이견조정을 위한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 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4조)

3. 기타 사항

- 가. 예산 조치사항 : 2009년도 예산반영 조치
- 나. 관련 법규 : 별첨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산업입지심의회 설치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기업의 생산활동에 필요한 산업용지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등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함으로써 경쟁력 있는 지역경제의 진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용지”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의 용지를 말한다.
2. “기존공업지역”이란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 이외의 공업지역을 말한다.
3. “대규모투자”란 외국인 투자기업이나 국내기업이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를 대구광역시 지역(이하 “지역”이라 한다)으로 이전하기 위하

여 투자하는 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인원의 수가 300명 이상인 공장·본사 또는 연구소의 신설이나 증설 또는 이전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2장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산업입지심의회(이하 “산업입지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산업용지의 공급 및 분양에 관한 사항
2. 산업용지의 가수요 억제에 위하여 필요한 입주자격기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산업단지 및 기존공업지역의 활성화를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산업입지심의회는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4조에 따른 대구광역시 유치기업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4조(산업단지 입주우선순위 선정방법의 특례) ① 시장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산업시설용지를 우선하여 분양할 수 있다.

1. 국내·외 기업으로서 대구광역시 관할구역(이하 “지역”이라 한다) 안에 대규모투자를 하는 기업
2. 지역 밖에 있는 기업으로서 지역 안으로 이전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큰 기업
3. 성장잠재력 및 지역경제발전 기여도가 높은 지역 안 소재 기업으로서 다음의 각 목의 기업
 - 가. 생산라인 증설 투자기업
 - 나. 새로운 법인 설립을 통해 신규사업에 진출하려는 기업
 - 다. 대기업 협력 및 수출증대 등의 성장력이 뛰어난 기업
 - 라. 고용효과·첨단기술 보유·투자규모 등이 우수한 기업
4.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

② 제1항에 의한 우선 공급의 경우 산업입지심의회 심의를 거쳐 입주업체를 선정한다.

제3장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제5조(구성) 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는 지원센터의 장 1명을 포함한 25명 이내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일반산업단지 등의 개발업무 담당국장이 되며, 지원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1. 산업입지, 도시계획, 건설, 교통, 공원·녹지,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의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
2.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해당 구·군의 4급 이상 공무원
3.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이 파견하는 공무원

제6조(지원센터의 장의 직무) ① 지원센터의 장은 지원센터를 대표하고, 지원센터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지원센터의 장이 미리 지명하는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간사 등) 지원센터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산업입지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8조(회의) 지원센터의 회의는 특별법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가 접수되거나 지원센터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체 없이 지원센터의 장이 소집하여야 한다.

제4장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제9조(구성) ① 특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두는 대구광역시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30

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 시장이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한다.

1. 시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 개발사업 담당국장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 5명 이상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구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 :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한 5명 이상
 - 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 : 3명 이상
 - 다.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심의위원회 : 2명 이상
 - 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 : 2명 이상
 - 마.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 2명 이상
 - 바.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 : 2명 이상

제10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②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재직기간으로 한다.

③ 제9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당해 위원회에서 임기만료 등으로 해촉된 때에는 심의위원회에서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

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및 서기) ①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심사위원회를 주관하는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산업단지조성업무 담당사무관이 된다.

제14조(위원의 제척 등) ① 위원이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직접적으로 용역 또는 사업을 하거나, 이해관계인인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회의에서 제척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회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간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됨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공정성에 해를 가져온 경우에는 당해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16조(관계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산업입지심의회, 지원센터 및 심의위원회(이하 “산업입지심의회 등”이라 한다)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산업입지심의회 등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수당 등) ① 산업입지심의회 등의 위원 및 회의 등에 참석하여 받

언하는 관계 전문가에 대하여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특례법 제13조에 따라 관계 전문가에게 기술검토서의 작성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술검토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 산업입지심의회 등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정의) 1. ~ 4. (생략)

5. "산업단지"라 함은 공장·지식산업관련시설·문화산업관련시설·정보통신산업관련시설·재활용산업관련시설·자원비축시설·물류시설 등과 이와 관련된 교육·연구·업무·지원·정보처리·유통 시설 및 이들 시설의 기능제고를 위하여 주거·문화·환경·공원녹지·의료·관광·체육·복지 시설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하기 위하여 포괄적 계획에 따라 지정·개발되는 일단의 토지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

가. 국가산업단지 : 국가기간산업·첨단과학기술산업등을 육성하거나 개발촉진이 필요한 낙후지역이나 2 이상의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걸치는 지역을 산업단지로 개발하기 위하여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나. 일반산업단지 : 산업의 적절한 지방분산을 촉진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다. 도시첨단산업단지 : 지식산업·문화산업·정보통신산업, 그 밖의 첨단산업의 육성과 개발촉진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안에 제7조의2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

라. 농공단지: 대통령이 정하는 농어촌지역에 농어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산업을 유치·육성하기 위하여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산업단지

제3조 (산업입지정책심의회) ①~② (생략)

③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와 시·군·자치구에 지방산업입지심의회를 둘 수 있다.

④ 지방산업입지심의회는 기능·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 (개발토지·시설등의 공급방법 및 처분절차 등)

① 사업시행자가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39조 및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분양계획 및 임대사업계획(이하 이 조에서 "처분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격기준·자격요건 및 대상자선정방법등 주요내용을 중앙 또는 당해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시행자에게 분양·임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자중에서 처분계획에서 정한 자격요건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받을 자를 선정하되, 그 대상자 간에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한다. 다만, 산업시설용지의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수 있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과밀억제권역으로부터 이 전하고자 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형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
 3. 삭제 <2008.9.25>
 4.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협동화 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고자 하는 자
 5. 법 제38조의 3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재정비계획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 되는 자
 6. 관련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이전이 요구되는 공장을 소유하고 있는 자
 7.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에 따른 재해경감 우수기업
-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제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산업단지 지정권자와 입주협약을 체결하고 산업단지 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배치 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는 산업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산업시설용지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광역시·대도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에 따라 자치구가 아닌 구가 설치된 시를 말한다)에 있는 산업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⑤ 제3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산업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비율의 산업시설용지에 대하여 입주 우선순위 등 그 용지를 분양받을 자의 선정방법을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1. 국가산업단지: 100분의 10
 2. 일반산업단지·도시첨단산업단지·농공단지: 100분의 30
- ⑥ 산업시설용지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용지의 공급방법에 관하여는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⑦ 사업시행자는 개발한 토지·시설등을 분양 또는 임대할 때에는 그 내용을 15일 이내에 당해 산업단지관리권자 및 산업단지지정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5조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이하 “국가산업단지”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은 국토해양부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이하 “일반산업단지등”이라 한다)의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에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②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산업단지 개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하고, 구성원은 해당 기관에서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업무와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③ 지원센터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도지사는 인근 군부대의 장, 지방환경관리청장, 지방산림청장, 지방국토관리청장 등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고, 파견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3일 이내에 그 담당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 및 시·도지사(이하 “국토해양부장관등”이라 한다)는 산업단지 지정건수 등을 고려하여 관계 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인력지원의 기간 및 방법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등으로부터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파견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산업단지 지정과 관련된 업무를 보다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센터에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설,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전문가로 자문단을 구성하거나 관계 전문가를 전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제7조에 따른 투자의향서 접수 및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산지 현황조사 등 개괄적인 입지타당성의 사전검토 및 조회

2.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승인신청서 접수 및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계 기관 협의·조정 지원

3. 제9조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및 후속조치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검토

5. 『환경정책기본법』 또는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선정 등 환경영향평가(2009년 1월 1일부터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6. 제13조에 따른 기술검토서의 작성

7. 그 밖에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⑦ 국토해양부장관등은 지원센터의 구성원이 산업단지의 지정·개발에 기여한 경우 포상·승진 등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해양부장관등은 다른 기관으로부터 파견받은 자에게 우선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⑧ 지원센터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토해양부에 설치되는 지원센터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① 국가산업단지 및 일반산업단지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와 시·도에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각각 둔다.

1~4.(생략)

②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시·도지사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부위원장은 제2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1. 해당 지정권자가 속한 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산업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부서의 장으로서 위원장이 임명하는 자

2. 도시계획, 산업입지, 건축, 교통, 환경 분야 등 산업단지 개발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서 산업단지 개발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속한 시·도에 설치된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 도시계획전문가, 설계전문가, 환경전문가 각 1인 이상을 포함하여 해당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4.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교통영향심의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심의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5.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구성된 재해영향평가위원회(2009년 1월 1일부터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구성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위원 중 해당 재해영향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6.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 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8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산업단지 예정지역에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에 대하여 심의권한을 가진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중 해당 산지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자

③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및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제2항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을 임명하기 위하여 같은 항 각 호의 위원이 속한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여야 하며, 위원의 추천을 요청받은 위원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⑥ 심의위원회는 회의내용을 녹취하고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⑦ 제2항 각 호에서 정한 위원별 최소 구성인원 등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투자의향서)

- ① 민간기업등은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 수립에 앞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투자의향서를 지정권자에게 제출할 수 있다.
 - 1. 투자자 소개서
 - 2. 사업규모 및 기간
 - 3. 사업예정부지
 - 4. 사업방식 및 주요 업종
 - 5. 입지수요 자료
 - 6. 재원조달계획
- ② 지정권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민간기업등에 지원센터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공하는 등 해당 산업단지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 1. 산업단지 예정부지에 대한 개략적인 법적 규제현황
 - 2. 산업여건 및 지역별 산업입지정책
 - 3. 환경여건(생태자연도 등)
 - 4. 농지·산지 등 토지이용여건
 - 5. 그 밖의 민간기업등이 요청하는 자료 중 지원센터에서 제공가능한 자료
- ③ 지정권자 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자는 제8조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의 수립 또는 신청 이전에 「문화재보호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13조 (기술검토서 작성)

- ① 지정권자는 주민의견 청취, 관계 부서 및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 및 조정을 거친 후 이견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전문가의 기술검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 ② 기술검토서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에 인력 및 자료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지원을 요청받은 기관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대구광역시 기업유치촉진 조례」

제14조(유치기업평가위원회의 설치)

- ① 유치대상기업의 공정한 평가 및 선정을 위하여 유치기업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 ②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평가한다.
 1. 유치대상기업의 사업계획의 타당성
 2. 유치대상기업의 기술적 우수성
 3. 유치대상기업의 경영능력
 4. 유치대상기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5. 기타 유치대상기업 선정에 필요한 사항
- ③ 제10조제2항제5호에 의거 유치위원회에서 제1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심의를 받은 유치기업에 대하여는 심의·평가를 생략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의회 <http://council.metro.daegu.kr>]

□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의안번호	556
------	-----

제출년월일 : 2009. 7. .
제 출 자 : 부산광역시장
(여성정책담당관)

1. 제안이유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가족구성원의 복지증진에 관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2. 주요내용

- 가. 센터는 센터장을 포함한 종사자 4명 이상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나. 센터운영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하고,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3조).
- 다. 수탁자를 공개모집에 따라 선정하되,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도록 함(안 제4조).
- 라. 수탁자의 의무와 센터의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및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2009년도 164백만원
- 다. 합 의 : 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
- 라. 기 타 : 입법예고(2009. 3. 18 ~ 4. 7) 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라 부산광역시건강가정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종사자는 센터장을 포함한 4명 이상으로 하되,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건강가정사 2명 이상을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센터장은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② 센터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센터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센터장이 정한다.

제3조(센터운영의 위탁) ① 시장은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제5항에 따라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수탁자의 선정 등) ① 제3조에 따른 수탁자를 선정하려면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6조에 따른 선정기준 등을 준용하여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산광역시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부산광역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7조를 준용한다.

제5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센터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다음연도 사업계획서 및 예산을 수립·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수탁자는 해마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실적 및 결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위탁기간이 만료되거나 위탁계약이 해지되면 운영경비에 관하여 정산절차를 거쳐 그 집행잔액과 시설·장비·비품 등을 시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센터의 운영에 관하여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센터의 운영 상황과 서류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한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으면 수탁자에게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첨]

부산광역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 조례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요약

① 재정수반요인

- 제3조 2항(“시장은 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비용추계의 전제

- 조례 제정으로 재정상 곧바로 추가되는 요인은 없음.
- 추계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4년)까지로 함(기존 국고보조사업임).

③ 비용추계의 결과

- 4년간 총 656백만원 필요

(단위 : 백만원)

구 분 \ 연 도	2009	2010	2011	2012	합 계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경비 지원	164 (국비 50% 시비 50%)	164 (국비 50% 시비 50%)	164 (국비 50% 시비 50%)	164 (국비 50% 시비 50%)	656 (국비 50% 시비 50%)
(개 소 수)	(1개소)	(1개소, 추가 0)	(1개소, 추가 0)	(1개소, 추가 0)	

II.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09년도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보조 내역(1개소 운영)
 - 총예산액 : 164,000천원

(2009년 본예산 반영, '08년도 지원예산과 동일)

- 세부 내역

- ▷ 인건비 : 95,148천원(4명)
- ▷ 사업비 : 53,550천원(교육·상담·문화·지원 사업비)
- ▷ 관리 운영비 : 15,302천원(공공요금 등 수용비)

○ 2010년~2012년까지 비용 추계내역

- 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비 지원

- ▷ 산출근거 : 1개소 운영비 지원액
- ▷ 재 원 : 국비 50%, 시비 50%

※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09년 현재 국고보조사업으로 보건복지가족부에서 확충중에 있으며, 전국 시·도 센터 설치수는 우리시를 포함하여 5개소임(서울, 부산, 대전, 울산, 경남)

[부산광역시의회 <http://www.busan.go.kr>]

■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관련 동향

1. ‘안전·안심·안정’중심의 안전도시 만든다	——	52
2.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	53
3. 녹색성장,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 내린다	——	55
4.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	56
5. 월별·테마별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	57
6. 지자체, 재난안전 예방활동 증가했다	——	59
7.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린다”	——	61
8.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획기적 개선	——	62
9.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이용 가능”	——	64
10. 주민등록번호 유출 근절 추진된다	——	65
11.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	69



최근 중앙정부의 지방 관련 동향

1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안전도시 만든다

- 5~10개 시범도시 선정, 5~10억원의 인센티브 지원 예정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각종 생활안전 사고 및 범죄·교통사고 예방, 안전한 생활공간 조성, 지역사회 안전문화 형성, 재난·재해 예방 등을 통해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국내 최초로 안전도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안전도시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사업을 주민과 자원봉사자 등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가 합심하여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도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 도로, 하천, 생활터 안전가꾸기 등 지역사회 안전 환경개선과 함께 안전지킴이, 안전모니터 요원, 범죄 없는 마을 만들기 같은 안전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는 도시를 말한다.
 - 이러한, 안전도시 사업의 추진은 전통적 재난관리에서 벗어나 '안전·안심·안정' 중심의 새로운 안전관리 패러다임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 지난 6월 5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최로 '안전한 나라, 안전도시 정책 세미나'를 개최하여 관계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착수하게 된 것이다.
-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전국 232개(제주도 행정시 포함) 시·군·구를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시도에서 추천한 우수 시·군·구 중에서 5~10개 내외의 자치단체를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시범도시로 선정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5~10억 범위 내에서 소요사업비를 인센티브로 지원할 예정이다.

- 또한, 행안부의 U-City 사업과 연계해 U-Safe City를 구축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 등 각종 안전 관련 사업을 우선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안전환 환경으로 개선해 나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 한편, 안전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도시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사업 취지, 시범사업 계획서 작성요령 등 공모지침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5개 권역을 선정하여 사업 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올해 추진하는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내년에는 합동평가 등을 통해 안전도시 사업을 전 자치단체로 확대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안심하며 살 수 있는 안전한 나라’가 되도록 할 계획이다.

2 「희망근로 상품권」,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린다

- 가맹제에 관계없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모든 상점 사용가능 -
- 상품권 사용 애로사항 희망근로 담당부서 상담·해결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사업의 급여 지급이 시작됨에 따라 급여의 평균 30%정도로 지급된 희망근로 상품권이 전국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등으로 본격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하였다고 밝혔다.
-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 지자체에서 시행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예산 1조7천억원, 투입인원 평균 25만) 참여자 급여의 일부분(30%수준)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고, 이 상품권을 지역(시도 단위 혹은 시군구 단위)의 전통시장과 동네 구멍가게 등 골목상권에서 소비토록하여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 「희망근로 상품권」은 전국적으로 희망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는 6개월(6.1~11.30) 동안 3,840억원 정도(기프트 카드 포함)가 발행될 예정이며, 액면가 1만원, 5천원, 1천원의 3개 권종을 지자체 상황에 맞게 선택하여 발행·유통하되 유통기간은 “3개월”로 제한된다.
- 한편, 행정안전부는 상품권 사용처에 대해 일부 언론과 시민들의 오해가 있다고 말하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은 지역의 영세업자의 매출증대를 통해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유흥업소나 백화점 등 대형판매점을 제외하고는 모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희망근로 상품권의 가맹점으로 가입하지 않아도 상품권 취급 및 금융기관에서의 현금화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상품권 가맹제도는 상품권 사용처(상품권 가맹점 스티커 부착)에 대한 인식 제고를 통해 상점주와 상품권 사용자 상호간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보완적인 대책인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가맹점 확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 상품권 가맹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이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영세사업자의 인지도를 높이고, 사용자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처 확대 등 개선안”을 마련하여 상품권 사용처 확대, 지자체 홈페이지 가맹업소 공개 등 상품권 사용에 대한 사용자의 인식을 높이도록 하였고,
- 또한, “상품권 활용관련 추가 설명지침”을 시달하여(7.3) 각 시군구와 읍면동에서는 7월 6일~10일을 희망근로 상품권 사용에 대한 홍보기간으로 지정하여, 희망근로 상품권에 대한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골목상권에 홍보전단을 배부하는 등 집중적인 희망근로 상품권 홍보에 나서도록 조치하였다.
- 한편, 상품권 사용시 애로사항이나 문의사항이 있으면 시군구별 담당부서 연락처(전화번호)를 고지함으로써 상품권 사용현장에서의

문제점 발생시, 공무원이 전화로 해결하도록 조치하였다고 밝혔다.

- 한석규 행안부 지역발전정책국장은 “희망근로 상품권은 희망근로 참여자와 지역의 영세상인들이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수단인 바, 지역 상인들과 희망근로 참여자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고 밝히면서 “희망근로 상품권이 지역의 상권을 살리는 획기적인 역할을 할 것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3 녹색성장, 전국 방방곡곡에 뿌리 내린다

- 행안부, 녹색성장 전문가 30명이 참여하는 녹색성장자문위원회 발족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녹색성장이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구석구석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녹색성장을 활성화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녹색성장 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행정안전부 녹색성장자문위원회(위원장 강정운 교수)’가 7월 7일 공식 출범한다.
 - 위원들은 정부종합청사 C/S룸에서 위촉식 및 제1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일류 선진국가 도약을 위해 전문적인 역량을 발휘하여 녹색성장을 추진할 것”을 다짐할 예정이다.
- 위원회는 2011년 7월까지 임기 2년 동안 행안부 부내 녹색성장 및 지역녹색성장에 대해 자문하게 된다.
 - 행안부 관계자는 “위원회의 구성원이 30명에 달해 효율적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녹색성장은 여러 분야가 있으므로 다양하고 심도 있는 자문을 위해 30명으로 구성하였다”고 밝혔다.
 - 또한 “신속한 자문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녹색성장 추진과제에 따라 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 위촉된 위원은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탄소배출권, 녹색마을, 환경

경제·계획, 녹색성장 실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였다.

- 또한 위원의 분포는 학계 15명, 연구기관 5명, 민간단체 5명, 민간기업 3명, 공공기관 2명 등으로 이루어졌다.
- 위원회는 녹색마을 조성, 지역녹색경쟁력지수 개발·보급, 탄소마일리지 확산, 녹색성장 실천운동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고 자문할 예정이다.

4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 행안부,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표 세대명부 열람권자 범위 축소,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 서식 마련,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방법 개선 등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 7월 9일(목)부터 입법예고한다.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주민등록 세대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 축소 정비

- 주민등록 세대명부, 전출·입자 명부 등의 열람권자 범위가 현재는 전입신고한 자, 주민등록표 열람권자 등으로 되어 있어 이해관계자도 가능하였으나,
- 앞으로는 전입신고한 자와 본인·세대원 등으로 축소하여 이해관계자에게 주민등록 공부상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것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 가정폭력피해자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신청서식 신설

-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

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 이에 따라 가정폭력 피해자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등을 첨부하여 본인의 등·초본 교부를 제한하도록 신청하는 서식을 신설하였다.

□ 그 외에 채권·채무관계 등 정당한 이해관계자가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시에 입증서류가 미흡한 경우 추가적인 자료로 「우편법시행규칙에 의한 내용증명」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일부 개선하였다.

□ 행정안전부는 이번 입법예고를 통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개정안에 적극 반영하고, 10월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입법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 또한 앞으로도 국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민등록관련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5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월별·테마별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

- 행안부,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등 각 분야 아이디어 접수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거창하고 예산이 많이 드는 정책이 아니라 한 두 가지의 작은 부분만 바뀌어도 국민생활에 실질적인 보탬이 되는 아이디어를 발굴해 우수 아이디어에 대해 시상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으로 실행하는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를 상시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 이에 따라 국민들은 7월 10일(금)부터 상시적으로 세금, 주택, 복지, 교육, 문화, 안전 등 국민생활 각 분야에서 조금만 바꾸면 서민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고 국민 불편이 해소될 수 있는 정책아이디어를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를 통해 제안할 수 있다.
 - 특히 ‘사교육비 절감’(7월), ‘에너지 절약’(8월), ‘내수경기 활성화’(9월), ‘청년 일자리 창출 및 맞벌이 부부 보육’(10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나눔사업’(11월) 등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국민적 지혜를 월별, 테마별로 중점 제안할 수 있다.
- 오는 11월 15일(일)까지 제출된 아이디어(이후 제출된 아이디어는 2010년 상반기 심사)는 부처 검토의견 및 전문가 심사를 거쳐 100개의 좋은 정책아이디어에 대해서는 정부포상(대통령상 10, 국무총리 10, 행정안전부장관상 80)과 함께 포상금(200만원~20만원)이 주어지며, 제도개선 절차 등을 거쳐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데 작지만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게 된다.
- 이번 「생활공감정책 국민아이디어 공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행정안전부 주민생활서비스 홈페이지(www.oklife.go.kr) 외에 일간신문, Naver·daum 등 인터넷 포털, 정부부처 및 해당 시·도·시·군·구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편, 행정안전부가 지난해 가을 ‘생활공감’이란 타이틀로 처음 실시한 정책 공모에서 일반 국민으로부터 얻은 정책아이디어가 각 부처 정책으로 시행되는 등 정책프로슈머 개념에 입각한 쌍방향 정책소통이 결실을 맺어 가고 있다.
 - ‘마트의 비닐봉투를 종량제 봉투로 대체 지급’, ‘경차택시 및 여성 전용택시 도입’, ‘국민임대주택에 중증장애인 우선입주’ 등 77건의 국민아이디어가 완료 또는 시행중이고

- 지난 2월 출범한 전국 3,041명의 정책프로슈머인 생활공감 주부 모니터단 운영을 통하여 4,000여건의 생활밀착형 지혜를 접수하여 10건을 정책화 하는 등 정책과정을 통한 쌍방향 소통노력을 다하고 있다.

6 지자체, 재난안전 예방활동 증가했다

- 행안부, 지자체 2/4분기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 집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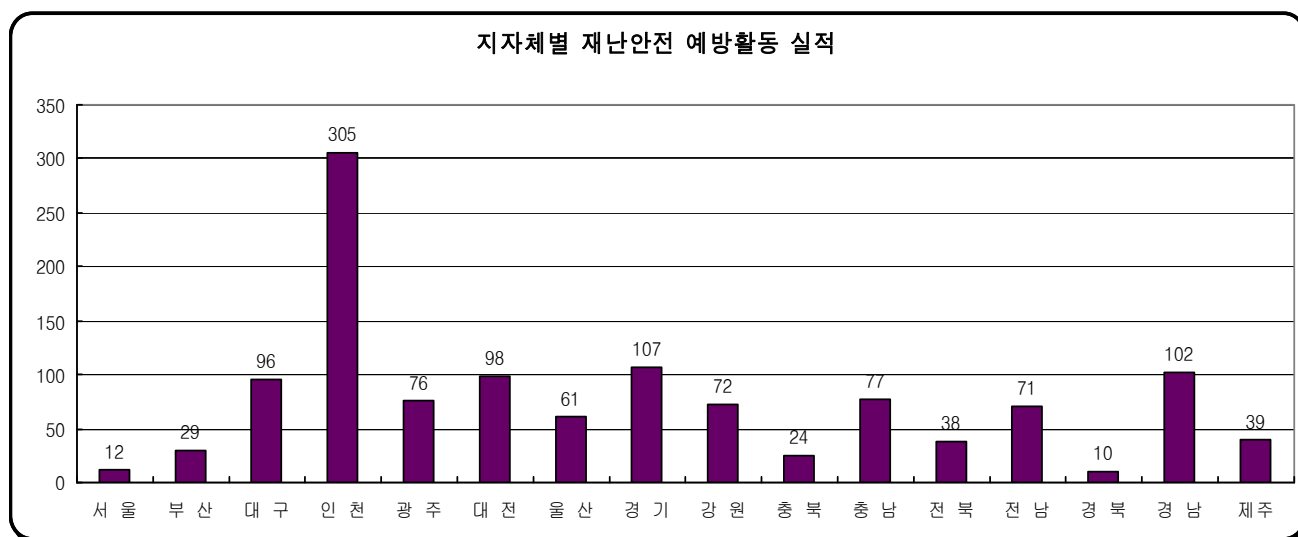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2/4분기 지방자치단체의 재난안전 예방활동이 1/4분기에 비하여 증가했다고 밝혔다.
 -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의 2/4분기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을 집계한 결과, 전체 1,217건(4월 472건, 5월 352건, 6월 393건)으로 1/4분기(778건)에 비하여 439건(6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행안부는 지자체의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을 행정안전부 재난안전실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지난 3월 25일부터 ‘지자체의 재난안전 예방활동 수범사례’도 홈페이지에 게시해 오고 있다.
- 지자체의 2/4분기 재난안전 예방활동(총 1,217건)을 자세히 살펴보면,
 - 분야별로는 화재예방(339건, 27.8%), 생활안전(289건, 23.7%), 환경(105건, 8.6%), 태풍·호우(91건, 7.4%), 전염병 분야(75건, 6.2%) 순으로 나타났으며
 - 지자체별로는 인천(305건), 경기(107건), 경남(102건), 대전(98건), 대구(96건) 순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이 많게 나타났다.
-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분기별 지자체의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을 정기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려, 재난안전이 사전 예방활동 중심으로 정착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안전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참고 1 2/4분기 지방자치단체별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

1. 2/4분기 전체 실적 : 1,217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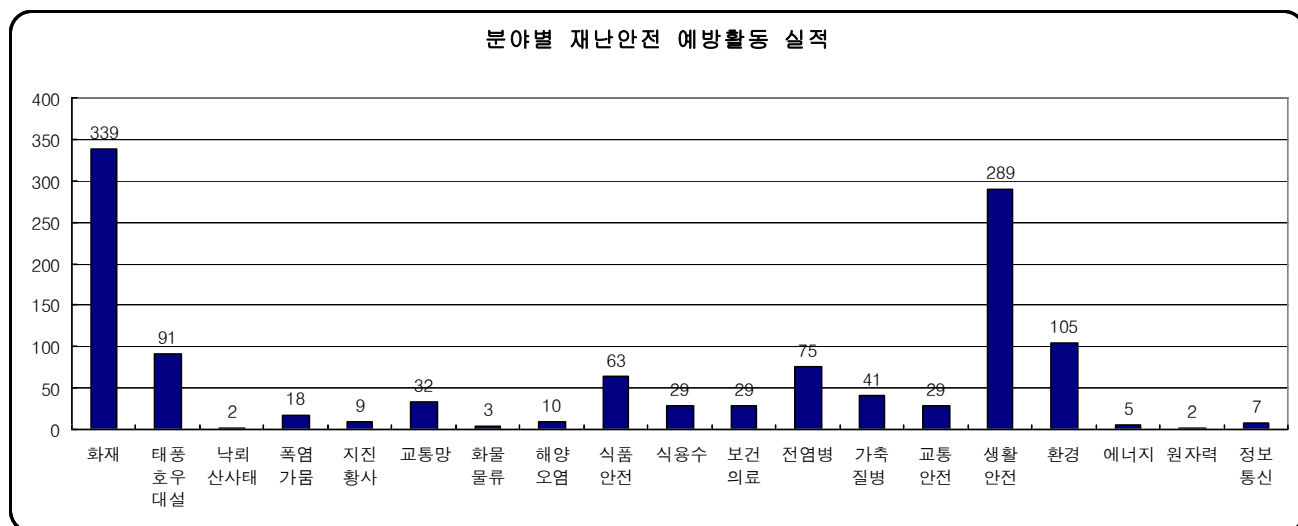
◇ 2/4분기 지자체별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

- 인천(305건), 경기(107건), 경남(102건), 대전(98건), 대구(96건) 순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4분기 분야별 재난안전 예방활동 실적

- 화재예방(339건, 27.8%), 생활안전(289건, 23.7%), 환경(105건, 8.6%), 태풍·호우(91건, 7.4%), 전염병 분야(75건, 6.2%) 순으로 예방활동 실적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7 “자전거로 고속도로를 달린다”

- 행안부, 7.12(일) 서울-춘천고속도로 자전거축전 개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2일(일) 산과 강이 어우러진 고속도로를 자전거로 실컷 달려볼 수 있는 「서울-춘천 고속도로 자전거축전」을 개최한다.
- 이번 행사는 서울-춘천고속도로 개통(7.15)에 앞서 열리는 것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달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유인촌), 경기도지사(김문수), 일반시민 등 6,000여명이 참가하며,
 - 자전거 홍보대사인 텔런트 한고은, 박은혜씨도 시민들과 같이 자전거를 탈 예정이다.
 - 서울-춘천간 고속도로에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회는 이번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참가자 접수시작 2시간 반 만에 접수가 마감되는 등 참여 열기가 뜨거웠다.
- 자전거 주행은 미사대교(하남시)를 출발해 왕복 28.4km, 54km 2개 구간으로 나누어 퍼레이드 형식으로 진행되는데,
 - 안전을 위해 미리 배부된 참가 번호표를 소지하고 있지 않거나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행사장에 입장할 수 없다.
 - 행사장 진입방법, 참가자 유의사항 등 행사관련 세부내용은 축전 홈페이지(<http://bikenet.chosun.com>)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는 기후변화, 에너지 고갈, 교통체증 등의 문제에 대한 실천적 대응 수단인 자전거를 녹색교통수단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상징적인 행사로 이번 자전거축전을 마련했다.
 - 행안부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환경도 살리고 건강에도 좋은 자전거를 국민들이 더욱 많이 이용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8 장애인을 위한 전자정부서비스 획기적 개선

- 전자민원GAC,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불평등 해소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7월 13일(월)부터 대표적인 전자정부서비스인 통합민원창구(www.egov.go.kr)와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을 통해 장애인 및 소수 웹브라우저 사용자의 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전자정부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전자정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전자정부 보편적 서비스」라고도 불리는 이번 사업의 주요 내용은
 - 특정한 웹브라우저(마이크로소프트사의 익스플로러)가 아닌 파이어폭스, 사파리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가 제공되는 웹 표준화와
 - 장애인, 노인 등 인터넷 소외계층에 글자크기 조절, 스크린리더를 통한 음성제공, 전문능력이 없이도 모든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웹 접근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 ※ 스크린 리더 : 시각 장애인인 경우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
- 정부는 그동안 전자정부 서비스가 특정 웹브라우저를 사용하지 않는 이용자와 장애인이 사용하기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에 따라
 - (예) 시각 장애인인 경우 스크린 리더라고 하는 화면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웹사이트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기 어려웠음
 - (예) 파이어폭스나 사파리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민원인은 사용자 로그인에 안 되거나 화면이 비정상적으로 깨어져서 나타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웠음
 - 장애인 단체 및 민간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장애인이 직접 시스템을 테스트하여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수요자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하여 시스템 개선을 추진했다.

- 이번 사업은 전자정부 서비스 중 가장 대표적인 통합전자민원창구인 '전자민원G4C'와 '정보공개시스템'에 시범 적용한 것으로
 - '전자민원G4C'는 5,100여종의 민원안내, 90여종의 민원신청, 24종의 민원발급 및 주소변경 알리미 등 부가서비스를 개선하고
 - ※ 90여종은 전체 민원신청 건수의 90%를 차지하는 상위 민원사무임
 - '정보공개시스템'은 회원관리, 공개안내, 정보공개청구 등 222개 화면을 개선함과 동시에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개선에 따른 보안성 점검도 병행 추진하여 시스템에 대한 보안도 강화하였다.
- 민간부문에서 「오픈웹」이라는 포럼을 운영하면서 정부서비스의 적극적 개선을 요청하고 있는 고려대학교 김기창 교수는
 - “아직도 많은 사이트에 불필요한 이미지가 많고, 암호화가 필요한 영역 등에 대한 접근성 개선, 서비스 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 등 개선할 부분이 많다”고 지적하면서 “전자정부 대표사이트인 '전자민원G4C' 등에서 많은 노력을 들여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 행안부는 온라인화에 따른 비용편익 효과를 민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 G4C상에 주민등록 등 민원서류 온라인 발급에 따라 절감되는 비용(탄소발생량 등)을 계산할 수 있는 '온라인절감효과계산기(일명 '녹색효과계산기')'를 설치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대한 일반인의 이해를 도울 예정이다.
 - ※ 녹색효과계산기 : 행정기관과 거리, 교통이용 수단, 방문시간 등을 고려하여 행정기관 방문에 따른 민원처리 사회적 비용계산 및 온라인 서비스 효과 제시
- 또한, 이번 사업 외에도 전자정부지원사업으로 올해까지 홈택스, 전자조달 등 47개 전자정부 시스템, 내년도까지 20여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는 등 점차적으로 보편적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9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정보를 네이버에서도 이용 가능

- 행안부, 올해 연말부터 『국정피디아』 콘텐츠 대국민 서비스 개시 -

- 국내 최초로 구현된 범정부 차원의 위키피디아 방식의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의 콘텐츠를 올 연말이면 일반 국민들도 이용 가능하게 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은 국정피디아를 외부 포털시스템과 연계하고 사용자 중심의 기능 개선을 위한 서비스 확대사업을 완료하고 연말부터 본격 서비스할 계획이다.
 - 이를 위해 행안부는 7월 14일(화) 정부중앙청사 CS룸에서 중앙부처와 시·도의 지식행정 관계자가 참석하는 「온라인 행정백과사전 국정피디아 서비스 확대사업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 국정피디아 서비스 확대사업은 대국민 서비스의 기반 마련과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외부 포털시스템 연계용 오픈 API 개발 △우수 콘텐츠 선정을 위한 전문가 검증 프로세스 구축 △목차 자동생성·부분 편집·UCC 동영상 등록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등을 주요내용으로 추진하였다.
- 이번 사업을 통해 중앙과 지방 공무원의 집단지성으로 창출된 지식을 국민에게 서비스함으로써 국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에 대한 신뢰 향상이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국정피디아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할 뿐 아니라 소통과 협업의 선진행정 패러다임의 구현으로 거버넌트 2.0을 실현해 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각 부처와 지자체의 정책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대국민 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선정하고 내용을 보완해 오는 12월에 정부기관의 홈페이지와 주요 포털 등을 통해 국정피디아를 선보일 계획이다.
- 이를 위해 우선, 국내 지식검색 1위 포털인 네이버와 연계 협의를 마치고 구체적인 테스트를 진행 중이며 다른 포털시스템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국정피디아는 지난해 10월 시스템 구축사업을 시작하여 12월말, 2008개의 콘텐츠로 정식 서비스를 개통하였으며 6개월 동안 각 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용어사전 통합 등으로 '09.7월 현재 1만 9천여 건의 행정용어를 확보한 상황이다.

10 주민등록번호 유출 근절 추진된다

- 행안부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 (5개 분야 17개 추진과제)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주민등록번호의 과도한 사용을 제한하고, 국내·외로의 유출을 근절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 추진키로 하였다.
- 금번 대책은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정보원, 경찰청,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등이 합동 TF를 구성('09.5~6월)하여 논의한 결과로서 5대 전략 17개 정책과제를 담고 있다.
- 주민등록번호는 그간 공공·민간 전 영역에 걸쳐 개인식별수단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으나, 수집·이용을 제한하는 법률이 없고, 보호조치가 미흡하여 유출 및 오·남용 사례가 빈번하였다.

- 특히, 중국 등 해외 웹사이트 상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어 범정부적 대응이 시급한 상황이다.

□ 금번 대책의 주요 핵심 과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온라인상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보급을 확대하고, 기능을 개선한다.

- 우선, 주요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I-PIN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다.
 - 공공기관은 금년 중 교육기관, 공사·공단 등 2,000여개 웹사이트에 추가 보급하고, 전체 공공기관으로 단계적 확대할 계획이며,
 - 민간 업체는 인터넷상 주민번호 대체 수단 의무 도입 대상 사이트를 공시한 후 보급을 독려키로 하였다.
- ※ 「정보통신망법」상 아이핀 도입 의무 : 3개월 평균 일일이용자 수가 5만 이상인 포털, 1만 이상인 게임·전자상거래 등 1,000여개 웹사이트

- I-PIN 보급과 함께 개별 웹사이트 회원 가입에 한정되어 사용된 I-PIN의 기능을 개선하여 타 웹사이트 및 온·오프라인 간 연계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사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 I-PIN을 이용하여 본인을 확인하고, 제휴사 통합 포인트 서비스, 온라인 예매 항공권 오프라인 발급 서비스 등 제공

- 한편, 이미 국민들에게 널리 보급된 공인인증서를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자 및 이용자의 대체수단 선택권과 편리성을 증진할 계획이다.

※ 공인인증서 발급 건수 : 2,063만건 ('09.5월 현재)

- 금년까지 공인인증서의 요금체계, 개인식별기능 추가 방안 등을 마련하여 '10년부터 인프라를 구축·보급할 예정이다.

□ 둘째, 주민등록번호 대량 노출 기관 및 사업자 공개를 추진한다.

- 그 동안 행정안전부 등이 웹사이트의 주민등록번호 노출 여부를 점검하여 개별 기관에만 통지해 오고 있으나,
- 앞으로는, 유출 기관명, 건수 등을 대외적으로 적극 공개하여 각급 기관과 기업체의 경각심을 제고시킬 방침이다.

□ 셋째, 해외에서의 주민등록번호 유통 근절을 위한 웹사이트 점검과 국제 협력을 대폭 강화한다.

- 중국 등 해외 사이트 대상 주민등록번호 노출 점검 주기를 대폭 단축(격월1회 ⇒ 월2회)하여 노출 여부를 신속히 확인하고,
 - 중국어에 능통한 현지 업체와 계약을 체결, 중국 웹사이트에 직접 전화 삭제를 요청하여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중국 현지 업체를 통한 웹사이트 전화 삭제 요청('09.3.17~ 4.27, 6주간) 시범 실시 결과, 80%의 삭제율 달성

- 아울러, 한·중 간 공식 외교 채널을 전방위적으로 구성·활용하여 중국에서의 한국인 개인정보 유출을 근절키로 하였다.
 - 우선, 금년 하반기 개최 예정인 한·중 무역실무회담, 한·중경제공동위 등 공식 외교 행사에서 한국인 주민등록번호 유출 문제를 의제화하여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 한·중·일 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여 개인정보보호 국제 협력 방안, 네트워크 정보보호 체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 또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중국 인터넷 협회, 포털 등이 참여하는 “민간부문 한·중 개인정보보호 협의체” 구성하여 중국 포털을 통한 주민등록번호 검색 차단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
 - 한편, 중국 해커에 의한 한국인 개인정보 탈취, 불법 거래 등 국제 범죄 대응을 위하여 중국公安부에 유출 정보 회수 및 공동 수사 요청하는 등 수사 협조 체계도 강화한다.

- 넷째,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상설화하여 구축·운영한다.
 -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필요하게 가입한 웹사이트의 회원 탈퇴, 주민등록번호 삭제를 전담하여 지원하는 “주민등록번호 클린센터”를 구축하여 365일 24시간 상설 운영할 예정이다.
 - ※ KISA 개인정보신고센터 홈페이지(www.1336.or.kr)에 전용 창구 개설
 - 민원인에게 주민등록번호 인증 내역 확인 방법, 회원탈퇴 요령 등을 안내하고, 회원 탈퇴 및 삭제 요청에 불응한 경우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에서 처리를 대행토록 할 계획이다.
- 다섯째,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에 관한 법·제도를 정비한다.
 - 「개인정보보호법」을 (국회 계류 중) 제정하여 ① 본인의 동의, ② 법령상 근거 ③ 법률상 업무 수행(조세, 병역 등)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이 가능하도록 엄격한 처리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 또한, 민간 분야의 경우 재산상 이익과 밀접한 관계가 있거나, 거래 관계의 안정성 확보 등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만 수집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적극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 행정서비스 분야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관행을 개선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행정서식을 일제 정비한다.
 - 수사, 신원조회, 금융 등 주민등록번호가 꼭 필요한 영역 외에는 생년월일 등으로 대체토록 개선한다.
- 기타 개인정보유출대응시스템 구축, 주민등록번호 암호화 등 웹사이트의 기술적 보호수준 강화, 포털·공공 웹사이트·TV 등을 활용한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등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 향후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별로 협조가 필요한 사항을 시달하고, 효율적인 과제 추진을 위하여 유관 기관과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여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II 신뢰사회 구축을 위한 인감증명제도 개편 추진

－ 인감증명 요구사무 대폭 감축 및 대안 마련 정착 후 폐지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와 관계부처는 7.29(수) 대통령 주재로 민간 정부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15차 회의를 개최하고 인감증명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하였다.
- 국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법률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60% 감축하고 전자위임장 등 다양한 대체방안을 마련·정착 후 인감증명제도를 5년내 폐지할 방침이다.

《 인감증명제도 현황 》

- 일제시대인 1914년 도입 이래 거래관계에 있어서 본인의사를 확인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널리 활용
 - － 국민 66.5%인 3,289만명 인감등록, 총 4,846만통 인감증명서 발급
 - － 주 사용용도 : 부동산등기 관련이 50% 수준

- 인감증명제도 개편은 국민들의 오랜 관행과 제도를 바꾸는 것으로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우선 1단계로, 인감증명 요구사무를 연내 대폭 감축한다.
 - 지난 5월부터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기구를 운영하고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22개 중앙부처 209종의 인감증명 요구사무 중 60%인 125종을 폐지하기로 결정하였다.
 - 인감증명 요구가 폐지되는 사무 중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122건)은 연내에 폐지하고, 법률 개정사항(3건)은 내년 상반기 중 입법을 통하여 폐지할 계획이다.
 - － 인감요구가 폐지되는 사무는 본인확인을 위하여 본인 신분증 사본이나 인·허가증/등록증 등에 양도사실을 기록하여 제출하는 것으로 인감증명서를 대신한다. 이로써 부동산 등기, 자동차 이전등록 등 재산권 관련사항을 제외하고는 행정기관에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 주요 감축사무 유형별 대체방안 》

유 형	감축 사무 (예시)	인감증명 대체방안
권리 양도	저작권 및 광업권의 이전, 질권설정, 등록 등	신분증 사본, 권리증에 대한 등록관청의 확인(인증) 등
본인 동의	재개발사업 동의, 재건축조합 가입	신분증 사본, 자필서명
보상금 등 수령	보상금, 환급금, 연금수령 등	신분증 사본, 본인 통장 사본
인·허가	영업 지위승계, 면허, 인·허가권 양도 등	인·허가증/등록증에 양도양수 표 기
임원 임명	(사회복지재단 등의) 임원 취임 등	신분증 사본, 임원임명승낙(동의)서
신고사항	대리인 자격(소송, 파산, 보증인 등)	신분증 사본, 위임장 등

- 또한, 이번에 폐지되지 않는 나머지 인감사무도 당사자가 직접
기관을 방문할 경우 인감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하였다. 대표
적인 존치사무인 부동산 등기 관련 사무의 경우 당사자 본인이 신
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방문신청하면 인감증명을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본인확인을 정확히 하기
위하여 향후 법원 등기소에 설치될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시스템
을 통하여 신원을 확인하게 된다.
- 계약서·위임장 등에 공증을 받는 경우에도 공증인에 의해 본인의
사가 확인되므로 별도로 인감증명을 받지 않도록 할 계획이다.
- 2단계로는 국민들이 기관방문 없이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하여 시행한 후 대체방안의 정착과 연계하
여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국민들이 인터넷과 IT기술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자위임장’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고, 인감증명 대용의 (가칭)‘본
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활용할 수 있
도록 할 계획이다.

- 또한, 대체수단의 활용 진척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하여, 대체방안이 정착되는 시점에 맞추어 인감증명제도를 폐지할 계획이다.

□ 구체적인 대체수단으로는,

- 첫째, 국민생활에 밀접한 부동산등기, 담보대출 및 자동차거래시 인터넷으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여 자택이나 직장에서 기관 방문없이 민원신청 할 수 있도록 전자인증 기반확충과 이용여건을 개선한다.
 - 부동산 전자등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대국민 홍보를 적극 실시하여 국민 접근성을 제고하며, 금융기관의 부동산 담보대출 시에도 법원의 전자등기시스템과 연계하여 저당권 설정을 인터넷으로 할 수 있게 할 계획이다.
 - 또한, 국토해양부에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을 ‘10년까지 구축하여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저당권 설정 등을 거래당사자가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게 한다.
- 둘째, 직장인이나 신세대들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직접 민원부서에 방문이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내년말까지 전자위임장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여 인감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이 제도가 도입되면 국민들은 집에서 전자위임장 전용 사이트에 접속하여 소정의 서식에 위임장을 작성하면 인감 요구기관에서는 컴퓨터상에서 위임장 내용을 직접 확인하고 민원업무를 처리하게 된다.
- 셋째, 인터넷을 활용하기 어려운 노인 등 IT 취약계층을 위해, 현재의 인감증명을 대신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가칭)」를 읍·면·동에서 발급하는 방안도 새로이 도입한다.
 - 본인이 읍·면·동에 방문하여 소정의 서식에 인적사항 등을 기재하고 서명하면 읍·면·동장 명의의 서명사실을 확인하는 확인서를 발급해 주게 된다. 이 확인서가 인감증명을 대신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 서명확인제도는 현장시물레이션

등을 거쳐 제도적 유용성 및 공공기관의 업무량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연말까지 구체적인 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 넷째, 주요 재산권 변동시 선진국에서 많이 활용하는 공증제도의 이용확대를 위해 관계부처 및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10년부터 공증제도 개편에 착수할 계획이다.

- 개편방향은 공증인력을 중장기적으로 확대하고, 공증수수료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공적 공증기관 지정을 확대하는 등 국민들이 공증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법률생활의 안전성이 더욱 보장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 다섯째, 기타 보완대안으로 신분증에 서명을 사전에 등재하여 계약 등 거래과정에서 서명을 본인확인의 보조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0년까지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서명등재 근거를 마련하고, 신분증에 서명 등록을 권장할 계획이다. 운전면허증에도 개인별 갱신주기에 맞추어 서명을 등재할 계획이다.

- 또한, 거래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통합민원 SMS 문자서비스(가칭)'를 구축하여 부동산 등기 등 주요 민원 접수 단계에서 본인에게 휴대폰으로 알려주는 문자서비스(SMS)를 실시하여 본인 모르게 이루어지는 부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통해 현 인감제도의 취약요소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인감제도 운영에 따른 공무원 인건비, 인감증명 발급에 따른 시간 비용 등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인감증명으로 인한 사건·사고와 법적 분쟁을 상당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 특히, IT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민들의 이용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 안정성이 강화되므로 신뢰사회 구축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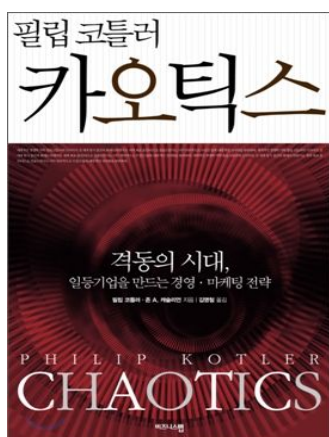
《 인감제도 관련 사고 및 비용 현황 》

- '08년 인감증명 관련 사고 : 89건, '03~'07년(5년간) : 825건
- 인감제도 운영 관련 소요비용 : 약 4,500억원(추산)
 - 인감증명 발급 시간비용 : 약 2천억원, 인감도장 제작 : 500억
 - 인감전담 공무원 약 4천명 / 인건비 1,800억, 기타 간접비 200억

-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인감증명제도 개편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관련부처별 실무 T/F 운용 등을 통해 단계별 과제를 구체화하고 이행을 추진하며, 인감제도 개편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안내를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자료출처 : 행정안전부, <http://www.mogaha.go.kr/>]

부록 : 행복한 책 읽기



도서명 : 카오틱스
저자명 : 필립 코틀러, 존 캐슬라이언
출판사 : 비즈니스맵
출판년 : 2009년
페이지 : 296
가 격 : 13,000원

이 책은 피터 드러커가 생전에 『The Age Of Discontinuity(단절의 시대)』에서 제기한 문제, 즉 현재는 과거의 연속선상에 존재하지 않으며 따라서 과거의 지식은 무의미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적극적인 대답을 제시하고 있다. 말하자면, 우리가 평형상태가 없는 상시 변화의 시대, 소위 '격동의 시대'로 진입했다면 우리의 이론적 프레임 또한 격동의 시대를 전제로 구성되어야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프레임은 과연 어떤 모습을 가질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이 책에서 제시하는 내용이다.

저자들이 명명한 '카오틱스'는 바로 격동의 시대를 전제로 만들어진 새로운 사고와 실행의 프레임이다. 전통적 이론은 격동의 시대를 일시적 혼란기, 스쳐 지나갈 찰나로 간주했다. 하지만 카오틱스는 격동의 시대를 정상 상태로 인정하고, 이를 '새로운 보편성의 시대(age of new normality)'로 규정한다. 나아가 밀려오는 격동을 조기 감지함으로써 다른 기업들이 생존에 급급할 때에도 오히려 기업의 성장과 수익 확보를 원활히 할 수 있는 전략과 기술을 제시한다.

펼칩 코틀러가 말하는 신(新) 경제 패러다임과 기업의 미래!

'일반적인 경제'는 끝나고 '격동기 경제'가 도래했다!

월스트리트발(發) 금융파탄으로부터 촉발된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전의 경제와는 단절된 새로운 경제의 탄생을 의미한다. 전형적인 경제순환을 기반으로 하는 '일반적인 경제'는 이제 종말을 맞았으며, 예측불가능성과 격변을 특징으로 하는 '격동기 경제'가 도래했다. 허리케인, 토네이도, 사이클론, 쓰나미 같은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재앙이 모든 것을 파괴하고 세상을 대혼란에 빠뜨리듯이 경제적 격동 역시 비즈니스 세계에 커다란 충격을 준다.

이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 아래에서 기업은 어떻게 지속 가능한 경영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책의 화두다. 파괴적 혁신과 큰 충격이 기습적으로 발생하는 격동기 경제 하에서는 과거의 경영지침이 무용지물이 된다. 따라서 비즈니스 리더들은 혼돈과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프레임워크와 시스템이 필요하다. 바로 '카오틱스 경영 시스템(Chaotics Management System)'이 그것이다.

격동의 시대, 진정한 강자는 어떻게 탄생하는가

궁극의 기업경영모델 '카오틱스 시스템'으로 재무장하라!

불황에 대다수의 기업들이 저지르는 판에 박힌 반사적 반응-마케팅비용 축소, 신제품개발 투자철회 등-은 빼야 할 지방 대신 키워야 할 근육을 줄이는 어리석은 다이어트에 비유할 수 있다. 코틀러는 이처럼 단순하고 근시안적인 방식이 라이벌에게 기회를 제공할 뿐임을 지적하며, '카오틱스 시스템'으로 기업경영을 리셋(reset)할 것을 제안한다.

카오틱스 시스템은 총 세 단계로 구성된다. 첫 단계는 정교한 기상레이더처럼 시장을 둘러싼 위험요소를 탐지하는 조기경보 시스템(early-warning system)이다. 여기서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높은 키 시나리오(key scenarios)를 구성하는 것이 두 번째 단계다. 마지막 단계는 각 시나리오에 가장 부합하도록 전략적 대응(strategic responses)을 실천하는 것이다. 기업은 이 같은 카오틱스 시스템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집중할 뿐 아니라 조직의 취약성을 줄여나갈 수 있다. 카오틱스 시스템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한 상황에 대처하는 탄력적인 위기대응 시스템의 기능을 하는 것이다.

격동의 시대에는 좋은 일, 나쁜 일, 이상한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난다. 때문에 임박한 위험과 새로운 기회를 남보다 빨리 포착하여 대응하는 능력이 기업의 생존에 절대적인 요건이 된다. 카오틱스 시스템이야말로 철두철미하고, 일사불란하고, 신속정확하게 격동기 경제를 헤쳐나 갈 궁극의 기업 경영모델이다.

[자료출처 : 인터넷서점]